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5 선고 2022가단5045438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6. 21.

판 결 선 고 2022. 7. 5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,243,121원 및 그중 42,192,340원에 대하여 2020. 2. 27.부터 2020. 3. 2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22. 5. 31.까지는 연 7.6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16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정우정

별지